

서울특별시 청년창업꿈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

# 검 토 보 고

## 1. 회부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946호
- 나. 제 출 자 : 서울특별시장
- 다. 제출일자 : 2019년 8월 7일
- 라. 회부일자 : 2019년 8월 13일

## 2. 제안이유

- 가. 청년 창업가에게 업무와 주거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여 창업자들이 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, 체계적인 보육지원을 통해 청년창업을 활성화하고자 '17년부터 운영하는 사업으로, 인근에 청년창업꿈터 2호점이 추가 설립할 예정으로
- 나.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에 대한 적정성 심의결과, '적정'으로 결정되어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3에 의거하여 서울특별시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

### 3. 주요내용

가. 위탁사무명 : 청년창업꿈터 운영

나.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

○ 민간위탁 추진근거

- 서울특별시 청년창업지원조례 제9조(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)
- 신홍합 창조밸리 거점 조성을 위한 청년창업 주거 및 네트워크 공간 조성 기본계획 수립
- 신촌,홍대,합정 창조밸리 구축 기본계획
- 청년창업꿈터 2호점 조성 및 운영계획

○ 추진 필요성

- 주거와 보육이 동시에 필요한 최적화된 창업환경 제공을 위해 창업분야의 종합적인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전문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

다. 민간위탁 사무내용

○ 청년창업꿈터 운영

- 입주기업 심사·선발 등 창업기업 보육지원
- 창업보육 프로그램 기획·운영
- 창업지원을 위한 행사기획, 관리, 홍보 및 교류·협력사업
- 졸업기업 사후관리 프로그램 운영 등

○ 청년창업꿈터 시설관리 운영

- 안전대책 수립, 시설물 안전관리

○ 산·학·연 협력을 통한 창업지원 네트워크 구축

라. 민간위탁 개요

- 위 치 : 서대문구 창천동 13-90 (신촌역 인근)
- 시설규모 : 연면적 828.09m<sup>2</sup>
- 시설개관 : '20.2월 예정 (\* '20.1월 청년창업꿈터 1호점 민간위탁 종료)
- 기 능 : 공간제공, 보육 프로그램 운영, 사업화 지원 등
- 보육규모 : 독립형 보육실 18개실
- 소요예산 : 535백만원 ('20년 기준)
- 위탁기간 :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(개관 준비 기간을 포함하  
되, 차기 민간위탁시에는 2년으로 함)
- 수탁기관 선정방법 : 공개모집
- 시설별 세부내역

시 설 명	청년창업꿈터 1호점	청년창업꿈터 2호점
위 치	서대문구 창천동 13-90	서대문구 창천동 13-100
건축규모	연면적 348.6m <sup>2</sup> , 지하1층/지상3층	연면적 479.49m <sup>2</sup> , 지하1층/지상4층
시설개관	'17.11월	'20.2월 예정
보육규모	독립형 보육실 8개실	독립형 보육실 10개실 내외
위탁기간	2년('20.2월~'22.1월)	2년4개월('19.10월~'22.1월)

마. 민간위탁운영평가 위원회 심의결과 : 적정

## 4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강상원)

### 가. 동의안의 개요

- 동의안은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 창업가들에게 창업활동과 주거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공간제공과 창업보육을 위해 청년창업꿈터 1호점 인근에 2호점을 추가로 건립하게 됨에 따라 이를 전문 민간단체에 위탁하려는 것임.

### 나. 청년창업꿈터 개요

- 서울시는 민선 6기 시장공약사항인 “5대 창조경제거점 육성사업<sup>1)</sup>” 시행의 일환으로 “신촌·홍대·합정 창조밸리 구축 기본계획(2014)”을 발표하고 창업 공간 조성을 위해 신촌지역 모텔 10곳의 매입을 검토하였음.
- 이 지역은 우수대학(연세대·서강대·이화여대·홍익대 등)이 위치하고 청년 거주 비율이 높고 젊은 창업자가 많아 창업거점지역으로서 기반 조성이 필요한 곳으로, 임대료 상승으로 인한 예비 스타트업의 지역 이탈을 막기 위한 공유공간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.

---

1) 구로·가산, 홍대·합정, 상암·수색, 동대문, 개포 등 5대 창조경제거점 육성을 박원순 시장은 민선 6기 슬로건으로 내세웠으며, 서울형 창조경제는 서울을 전국 문화콘텐츠 산업의 메카로 보고 G밸리, 상암 DMC 등 5대 거점을 집중 육성한다는 계획임.

- 이에 따라 청년 창업을 지원하고 지역 활성화를 유도하는 새로운 유형의 도시재생·청년창업 결합모델로 업무공간과 주거공간을 동시에 제공하는 “청년창업꿈터 1호점”을 서대문구 창전동에 2017년 조성하였음.
- ‘청년창업꿈터’ 1호점은 지하 1층 ~ 지상 4층(연면적 348.6㎡) 규모로,
  - ▶ 다목적공간과 운영사무실 ▶ 주거와 사무공간 ▶ 공동세탁실, 공용키친 ▶ 다용도 회의실과 쉼터로 구성되었음.
- 2018년 입주기업(8개)의 전체 매출은 15억 3천 9백만원이며, 투자유치는 6억 9천만원, 지식재산권은 37건을 등록하는 실적을 기록하였음.
- 서울시는 회의실, 업무공간 등의 부족 문제를 호소하는 입주기업인의 의견 등을 반영해 인근에 2호점 대상 물건을 지난해 12월 매입하였음.
-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」은 기존 민간위탁으로 추진 중인 사무가 새롭게 공유재산을 추가하는 경우에 기존 위탁 사무를 종료하고 신규 민간위탁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어 공유재산(2호점)을 새롭게 추가해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였음.

## 〈청년창업꿈터 1, 2호점 개요〉

	
<p>위 치 : 서대문구 연세로2다길 11-3                  시설규모 : 지하1층, 지상4층(토지 167.9㎡, 연면적 348.6㎡)                  공 간 : 8실                  위탁기간 : 2017.2. ~ 2020.1.(3년)                  사 업 비 : 33억5천만원(시비 25억5천만원, 구비 8억원)</p>	<p>위 치 : 서대문구 연세로2다길 19                  시설규모 : 지하1층, 지상4층(토지 167.9㎡, 연면적 348.6㎡)                  공 간 : 10실 내외                  위탁기간 : 조성 중 (2020.2월 개관 예정)                  사 업 비 : 34억8,200만원(국비 4억5백만원, 시비 20억9,500만원, 구비 10억3,200만원)</p>

### 다. 민간위탁의 타당성

- 민간위탁은 행정조직의 비대화를 억제하고 행정의 고비용·저효율 문제를 개선하거나, 민간의 특수한 전문기술을 활용함으로써 행정 사무의 능률성을 제고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목적에서 추진하는 것임.
- 청년창업꿈터 1·2호점의 경우 각각의 시설에 입주기업을 위한 관리 인력(센터장, 사무인력 등)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지만, 비교적 소규모 시설이고 인근에 위치해 있어 하나의 수탁기관에서 일괄 위탁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됨.

- 1호점의 민간위탁금(2019년, 2억 6천 7백만원)을 기준으로 보면, 개별 위탁했을 때보다, 통합 위탁할 경우 인건비 1억 9백만원이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남.<sup>2)</sup>
- 또한, 한정된 공간의 효율적 이용이 가능해지고, 입주기업 간 정보공유가 활발해지는 등 통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됨.
- 이번 동의안은 내년도 민간위탁금으로 5억 3천 5백만원<sup>3)</sup>을 편성한 바, ‘입주기업 사업화 지원’ 사업비를 올해 4천만원에서 1억 8천만원으로 대폭 증액하였기 때문임(5백만원/기업 당 →1천만원).
- 입주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인센티브를 늘리는 방안도 필요하지만, 입주기업들은 비좁은 주거 공간과 회의실, 소음 노출 등으로 인한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제시되어야 할 것임.
- 또한, 인근에 창업 진흥을 위한 산업 레지던스가 조성될 예정<sup>4)</sup>임에 따라 서로 연계하여 신촌 일대가 서울을 대표하는 창업클러스터로

2) 청년창업꿈터 1호점의 2019년 민간위탁금(2억 6천 7백만원)기준으로 2호점을 개별 위탁할 경우 총 사업비는 5억 3천 4백만원이 산출되었으나 통합 위탁할 경우 3억 8천 8백만원으로 산출되어 인건비 등이 절감되는 것으로 검토한 바 있음(청년창업꿈터 1호·2호점 민간위탁 추진계획, 2019.5)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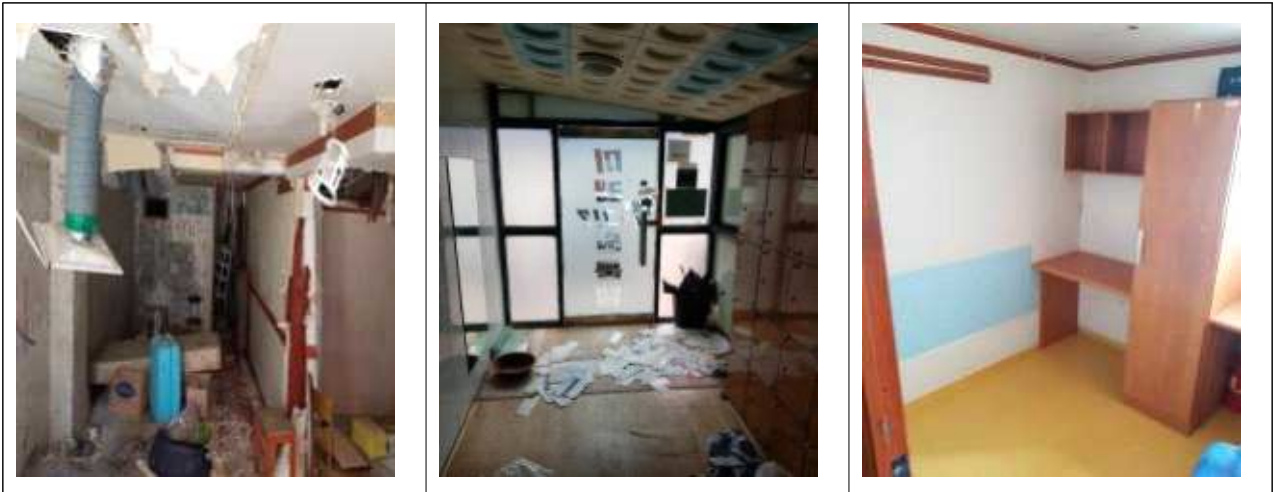
3) 2020년도 청년창업꿈터 민간위탁금은 ▶직원 5명(센터장 1명, 직원 4명)의 인건비 1억 8,250만원 ▶시설운영비 8,388만원 ▶프로그램 운영 사업비 2억 6,861만원으로 구성됨.

4) 2020 회계연도에 역세권 일대 공간의 매입 또는 임차를 통한 산업 레지던스 조성 사업을 위해 약 232억 6천1백만원을 편성해 5개소의 건물(서대문구 창천동 13-69, 29-14, 마포구 노고산동, 관악구 신림동 1432-28, 1432-98) 매입을 추진할 계획임.

성장할 수 있는 종합적인 관리체계 구축이 요망됨.

- 한편, 2호점 매입이 지난해 12월 이뤄졌으나, 약 8개월 동안 착공없이 빈 건물로 방치되고 있어 시민의 안전과 도시 미관상에도 좋지 않으므로 이른 시일 내에 공사가 이뤄져 공유재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다해야 할 것임.

### 〈청년창업꿈터 2호점 현장〉



※자료 : 청년창업꿈터 2호점 2019. 8월 현재

담당 조사관	연락처
이시우	02-2180-8056



# “청년창업가의 업무와 주거공간 제공을 위한” 청년창업꿈터 1호·2호점 민간위탁 추진계획

청년창업가에게 주거와 보육을 제공하기 위한, 청년창업꿈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문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함

## 1 위탁 개요

### 추진근거

-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6조
- 서울시 청년창업지원조례 제9조
- 신흥합 창조밸리 거점 조성을 위한 청년창업 주거 및 네트워크 공간 조성 기본계획 수립(시장방침 제246호, '15.9.)
- 시장요청사항 : 신촌지역에 10개 창업모텔 구입 및 조성('16.4.)
  - (가칭) 창업모텔 추가 조성 중장기 계획 수립(행정1부시장 방침, '16.7.)
- 청년창업꿈터 2호점 조성 및 운영계획('18.8.)

### 추진경위

- 청년창업꿈터 1호점 조성 완료 및 개관 운영 : '17.11.~
  - 위탁기간 : '17.2.1.~'20.1.31.(3년), 수탁기관 : (주)오픈놀
- 청년창업꿈터 추가조성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: '17.6.~12.
  - 타당성조사 용역 사전심사 실시(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) : '17.11.~'12.
- 청년창업꿈터 2호점 추가조성 공유재산심의 완료 : '17.9.
- 청년창업꿈터 2호점 추가조성 리모델링 공사 : '18.6.~12.

**위탁시설 현황**

- 꿈터 1호점 : (위탁기간) '17.2.~'20.1. / (수탁기관) (주) 오픈놀
  - 민간위탁유형 : 공모에 의한 신규위탁(시설형)
- 꿈터 2호점 : '19.12월말 준공
  - '20.2월 개관 예정(준공 후 기업입주 등 개관을 위한 준비기간 필요)

구 분	꿈터 1호점	꿈터 2호점
위 치	서대문구 연세로2다길 11-3	서대문구 연세로2다길 19 ※1호점 인근(약10m) 위치
시설규모	지하1층, 지상3층 (토지 167.9㎡, 연면적 348.6㎡)	지하1층, 지상4층 (토지 179㎡, 연면적479.49㎡)
공 간	8실	10실 내외
위탁기간	현재	'17.2.~'20.1.(3년)
	향 후	'20.2.~'23.1.(3년)

**2 통합 민간위탁 검토**

**검토목적**

- 위탁시설인 창업꿈터 2호점과('19.12월 준공예정) 창업꿈터 1호점 ('20.1월말 민간위탁 계약종료)이 서로 인근에 위치(10m)하여
-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두 개의 시설을 하나의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함

**통합위탁 필요성**

- 한정된 공간의 효율적 이용 가능(꿈터 1호점 회의실 등 공유공간 부족)
- 소규모 면적의 보육센터에 입주기업 관리인원(센터장, 사무요원 등)이 필수적으로 필요하여 개별 위탁에 따른 운영비 절감

- 인건비 109.5백만원/연 절감(2개소 8명 → 통합운영 5명 배치)

※ 1명 인건비 36.5백만원 소요('19년 예산 기준)

○ **꿈터1호점과 2호점의 입주기업 상호 보유자원 공유 등 네트워크 필요**

※ **장단점 비교**

구 분	개별 위탁	통합 위탁
내 용	◦ 1호점과 2호점 수탁사 각각 선정	◦ 1호점과 2호점을 동일한 수탁사로 선정
소요예산	◦ 534백만원(=267백만원x2개소) ※ '19년 민간위탁금 기준	◦ 388백만원(인건비 109.5백만원 절감)
장 점	◦ 양측 수탁사들의 성과 비교로 사업효과 향상 기대	◦ 인건비 절감(109.5백만원/연) ※ 328.5백만원 절감(3년) ◦ 한정된 공간 효율적 이용 가능(공유개념) ◦ 입주기업 간 정보공유 등 교류 용이 ◦ 통합 위탁으로 시너지 효과
단 점	◦ 사업 분리, 민간위탁 남발 비판 우려	◦ 지점의 특화된 사업 발굴 어려움 (단일 수탁사 운영으로 획일된 사업추진 우려)

**검토결과**

- (비용적 측면) 민간위탁 관리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하여 인건비 등 위탁예산 절감이 가능한 통합위탁 방법이 바람직함
- (운영적 측면) 효율적인 공간운영, 꿈터 간 통합으로 인한 시너지효과가 큰 통합위탁 방법이 효과적임
- (검 토 결 과) 운영비 절감의 효과가 높고 시너지 효과가 크며 두 지점이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어 하나의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통합위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

### 3

## 민간위탁 추진계획

### □ 추진개요

- 위탁사무명 : 청년창업꿈터 통합운영
  - 위탁시설 : 청년창업꿈터 1호점, 청년창업꿈터 2호점
- 추진방법 : 꿈터1호점의 민간위탁 종료('20.1월) 도래시점에 신규 조성되는 꿈터2호점을 함께 신규 민간위탁으로 선정 운영
  - 2018년 서울시 민간위탁 처리 지침(17p)

#### 【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(조직담당관, '18. 7.)】

- 기존 위탁사무의 내용 등 변경 시 『신규 민간위탁으로의 처리 기준』
    - 다음의 경우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기존 위탁사무는 종료된 것으로 보고 신규 민간위탁 추진절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해야 함
      - ▶ 기존 위탁 사무의 내용이 전면적으로 변경되는 경우
      - 위탁하는 공유재산을 추가하는 경우
- 이하 생략 -

- 입주기업 보육과 시설관리를 각 해당 전문업체에 수행하게 하여 전문성 강화

- 위탁근거 : 서울시 청년창업지원조례 제9조

#### 제9조(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등)

- ① 시장은 청년 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청년창업지원센터(이하 "창업지원센터"라 한다)를 설치할 수 있다.
  1. 청년 창업자의 발굴·육성
  2. 창업 공간 및 시제품 제작 지원(3~7호 생략)
- ② 시장은 창업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창업지원센터를 창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○ 위탁사유

- 주거와 보육이 동시에 필요한 최적화된 창업환경 제공을 위해 창업분야 종합적인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민간업체 선정 필요
- 청년창업 주거공간 운영을 위해 민간의 전문성, 업무추진 효율성 고려

○ 위탁기간 : 2년('20.2.~'22.1. 예정)

※ 회계감사 및 종합성과평가 실시 등을 통해 2년 이후 연장여부 추후 결정

○ 위탁유형 : 시설형 위탁(신규위탁)

○ 수탁자 선정방법 : 공개경쟁

□ 위탁사무 내용

○ 청년창업꿈터 1호점·2호점 주거·입주기업 보육 등 사업추진 전반

- 입주기업 심사·선발, 창업 주거공간 운영
- 운영활성화를 위한 창업보육 프로그램 기획·추진
- 청년창업 지원을 위한 각종 행사기획, 관리, 홍보 등 사업추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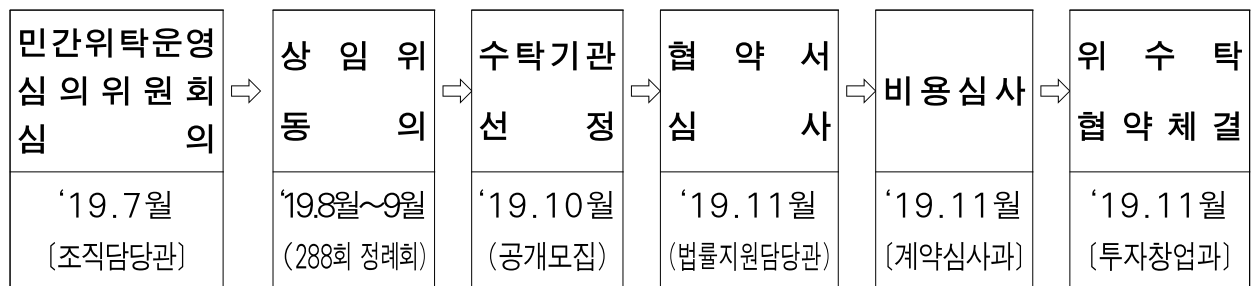
○ 청년창업꿈터 1호점·2호점 주거공간 시설관리 및 운영 전반

- 안전대책 수립, 재난대책 매뉴얼 작성 등 시설물 안전관리 총괄
- 청소, 경비 및 시설 유지보수 총괄 등(안전점검, 보안관리 등)

○ 산·학·연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 수립

- 인근 대학교 캠퍼스 타운 등 창업시설과의 연계 운영 등

□ 추진절차(신규위탁)



## □ 위탁예산('20년) : 535,000천원

※ '19년 꿈터 1호점 예산 267백만원

### ○ 운영비 : 266,386천원

- 인건비 : 182,500천원(36,500천원x5인)

▶ 센터장 1명, 매너저 4명(1호점, 2호점 각 2명)

- 시설운영비 : 83,886천원(41,943천원x2개소)

▶ 임차료, 공공요금, 기타운영비 등 1호점, 2호점 각 41,943천원

### ○ 사업비 : 268,614천원

- 입주기업 선발, 사업화자금지원, 네트워킹 프로그램 운영 등

※ 통합운영에 따른 인건비 절감액(328백만원/3년)을 프로그램 운영비 등에 투입하여 꿈터 운영 내실화

## 4

## 추진 일정

-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자료제출·심의(조직담당관): '19.06.~07.
- 시의회 민간위탁 동의(288회 정례회) 등 : '19.08.~09.
- 수탁기관 선정(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) : '19.10.
- 협약서 체결 등 : '19.11.

붙임 1. 청년창업꿈터 1호점 현황

2. 청년창업꿈터 2호점 현황

3. 민간위탁 관련 규정(민간위탁 관리 지침, 창업지원조례)

## 청년창업꿈터 1호점 현황

### 운영개요

- 위 치 : 서대문구 연세로2다길 11-3
- 규 모 : 지하1층, 지상4층
- 운영기관 : (주)오픈놀
- 위탁기간 : '17.2월~'20.1월(3년)
- 공간구성 현황
  - 지 층 : 운영사무실·공용업무공간·회의실
  - 1~3층 : 주거 및 사무공간·회의실, 공동세탁실
  - 4 층 : 공용키친, 다용도회의실, 네트워크 및 휴식 공간
- 지원내용 : 입주기업 보육, 사업화 자금 지원, 컨설팅, 창업교육 등
- '19년 사업예산 : 268백만원



### 추진현황

- 수탁기관 선정('17.2.16) 및 세부운영 계획 수립('17. 2~9월)
- 청년창업꿈터 개관식 및 8개기업 입주완료('17.11.13)
- '18년 입주기업 선발('18.8~11월) : 4개팀 10명

### '18년 운영 실적

- 8개 입주기업, 매출 1,539백만원, 투자유치 690백만원, 지식재산권 37건 등
- 입주기업 사업화 프로젝트 지원 : 10회 22백만원
- 사업화 및 투자역량 강화 교육 8회 및 멘토링 7회 실시
- 사업추진 애로사항 및 사례공유 간담회 23회(384명), 성과보고회 2회

### '19년도 추진 계획

- 2기 입주기업 중간 사업평가 및 성과보고회 : '19.5~9월
- '19년(3기) 입주기업 모집 및 선발 : '19.10월

## 붙임2

# 청년창업꿈터 2호점 조성 현황

(※'19. 12월 준공예정)

### □ 조성개요

- 위치 : 서대문구 창천동 13번지 100호(미래여관, '91년 준공)  
※ '18.11월 매입완료, 청년창업꿈터 1호점 인근(약 10m)
- 규모 : 지하 1층, 지상 4층 (토지 179.2㎡, 연면적 479.49㎡)
- 공간구성(안) : 주거 및 업무공간, 회의실, 휴게실 등 공용공간
- 사업비 : 3,350백만원  
※ 매입비 2,400백만원 (국비 405백만원, 시비 1,995백만원),  
설계 및 공사비 900백만원 (전액 구비)



〈창업꿈터 2호점, 10m인근 위치〉



〈창업꿈터 2호점〉

### □ 추진일정

모텔 매입 (완료) (18.9~11월)	· 계약, 부동산 등기·소유권 이전 등
↓	
기본 및 실시설계(진행중) (19.4~5월)	· 기본 및 실시설계(서대문구)
↓	
공사발주 시행 (19.6~11월 예정)	· 리모델링 공사(서대문구)
↓	
시설 준공 ('19.12월중)	· 청년창업꿈터 2호점 준공
↓	
시설 개관 ('20.2월중)	· 청년창업꿈터 2호점 개관 운영



##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

- 기존 위탁사무의 내용 등 변경시 신규 민간위탁으로의 처리 기준
  - 관련 절차를 통해 민간위탁으로 이미 추진 중인 사무는 그 사무 수행을 중단하지 않는 한 당초 위탁사무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 사무를 관리
  - 다만, 다음의 경우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기존 위탁사무는 종료된 것으로 보고 신규 민간위탁 추진절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해야 함
    - ▶ 위탁유형을 변경하는 경우
      - 예산지원형 ↔ 수익창출형, 시설형 ↔ 사무형
    - ▶ 기존 위탁사무의 내용과 전혀 다른 사무를 추가하거나 기존 위탁사무의 내용이 전면적으로 변경되는 경우
      - 다수의 위탁사무를 통합하는 경우
      - 위탁하는 공유재산을 추가하는 경우 등
    - ▶ 기존 위탁사무를 두 개 이상의 위탁사무로 분리하는 경우
      - 시설/시설, 사무/사무, 시설/사무로 분리시 각각 신규 추진
        - ※ 소관부서가 분리되더라도 위탁사무 자체가 분리되는 경우가 아닌 경우 적용되지 않음(다만, 분리된 부서 중 주관부서를 정하여야 함)
    - ▶ 기존 위탁사무의 수행을 1년 이상 중단하였다가 다시 위탁하는 경우
    - ▶ 국가기관 또는 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수행하던 사무를 이관받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등

# 서울특별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

**제9조(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등)** ① 시장은 청년 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청년창업지원센터(이하 "창업지원센터"라 한다)를 설치할 수 있다.

1. 청년 창업자의 발굴·육성
2. 창업 공간 및 시제품 제작 지원
3. 제품 홍보·마케팅 지원
4. 청년 창업자의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에 대한 지원
5. 청년 창업자의 해외 진출 지원과 투자유치 지원
6. 창업에 필요한 교육과 상담 제공
7. 그 밖에 창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

② 시장은 창업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창업지원센터를 창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.

1.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
2. 수탁자의 중대한 과실 등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
3. 수탁자에게 위탁사무를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
4. 수탁자의 신의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
5.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위탁이 적절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

④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탁 관련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를 준용한다.

⑤ 시장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창업지원센터에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.